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본잠식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등〉

■ 박상웅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077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자본잠식기업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등 (안 제7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상웅 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8. 22.

다. 회 부 일 : 2024. 8.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재무상태 등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는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부처 등이 일부 자본잠식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국가 계약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는 경우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참가자의 자기자본 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II. 검토의견

1. 자본잠식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등 (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 계약의 방법 -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u>재무상태</u> 등 사전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음.(제7조제2항) - <신 설>	○ 계약의 방법 -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u>재무상태(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포함)</u> 등 사전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음. (안 제7조제2항) - <u>입찰참가 사전심사 결과 자기자본 잠식이 확인될 경우 입찰 참가 제한 가능</u> (안 제7조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사전심사요소에 포함시키고 자기자본 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본잠식은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성된 자본총계가 납입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를 의미하며 지속적인 음의 잉여금으로 인해 자본총계마저 음의 금액이 되었을 경우를 완전자본 잠식이라고 함.

기업의 낮은 수익률, 악화된 경영상태 등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발생하게 되며, 자본잠식에 빠진 기업은 기업신용도평가에 있어 낮은 평가

등급을 받게 됨. 이에 따라 자본잠식 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렵고 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해 자본잠식 기업을 입찰에서 배제함으로써 공공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고 공공계약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임.

다만, 이미 현행법은 재무상태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심사요소로 평가하고 있으며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¹⁾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기준 등급을 충족한 자만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함에 있어 이미 재무상태²⁾가 반영되고 있고 기업의 대출 심사 시 자본잠식 여부만으로 대출

1)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심사기준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6조 및 제7조, 별표 2 및 3을 고려하여 해당공사의 성질·내용 등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③ 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B0)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상태나 담보의 종류 등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가 결정됨³⁾. 또한 기업활동을 위해 발행되는 회사채의 경우도 자본잠식 여부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자본잠식이 발생한 경우에 신용평가등급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입찰참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공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제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국가계약법」은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지체상금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1의2. ~1의4. (생략)

1의5. 제1호라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나. 기업 및 법인의 연혁·목적·영업실태·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概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다. 가목 및 나목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IBK 기업은행은 기업대출은 가용한도 범위 내에서 기업의 신용 및 각종 담보에 기반하여 대출을 제공하며, 부동산 이외에도 동산·채권 등 다양한 범위의 담보물이 인정될 수 있음을 기업대출 상품설명서를 통해 제시하고 있음.

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이행 확보수단을 가지고 있음⁴⁾.

따라서 자본잠식에 빠진 기업의 입찰참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자본잠식 기업의 계약 미이행 등이 발생한 경우 기존의 계약이행 확보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지 논의가 필요할 것임.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여러 항목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부실 위험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고, 자기자본 잠식 여부만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판단할 경우 신설 기업의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金)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8. (생략)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회 제한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자본잠식은 회계학적 개념이므로 법률에서 자본잠식의 정의를 추가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유관단체 의견으로 대한건설협회는 건설한 기업의 경우도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일시적 재무상태 악화가 가능하고 자본잠식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방지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전문건설협회는 관계 법령에서 자본금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계약의 방법) ① (생략)	제7조(계약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 실적, 기술능력, <u>재무상태</u> ,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② ----- ----- -----재무 상태(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포함한 다)----- ----- ----- ----- ----- -----.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한 결과 참가자의 자기자본 잠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0